

#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

—隣接國 制度와의 比較 考察—

金 東 熙

(서울大學校 法大 教授)

| <目 次>                                |               |
|--------------------------------------|---------------|
| I. 序 論                               | —隣接國家와의 比較考察— |
| II. 스웨덴과 기타 北歐國家에 있어서의 社會保障 및 社會福祉制度 | A. 醫療保險       |
| A. 社會福祉制度                            | B. 勞動災害補償     |
| B. 社會保障制度의 觀念 및 範圍                   | C. 年金制度       |
| III. 스웨덴의 現行 社會保障制度                  | D. 失業保險制度     |
|                                      | E. 家族手當制度     |
|                                      | IV. 結 論       |

## I. 序 論

社會保障 내지는 社會福祉制度가 가장 발달된 國家로는 영국과 스웨덴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國家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發病하여 治療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入院한 경우에도 전혀 治療, 入院費를 支拂하지 아니했다는 逸話는 우리가 가끔 듣는 바이다. 이것은 물론 專門인 觀點에서는 社會保障制度의 一部門인 醫療保險에 한정된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또한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餘他的 社會保障 내지는 社會福祉制度가 어느 정도 발달되고 완비되어 있는 가를 示唆하여 주기에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영국의 制度에 관한 한 이미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의 支援下에서 매우 충분한 論文과 著書가 出刊된 바 있다.<sup>(1)</sup> 따라서 本稿에서는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福祉國家로서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를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1) 韓昇洙, “英國의 國民醫療制度—歷史的 背景, 內容과 評價—,” 『社會科學論文集』,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979.

李海英, 韓昇洙 共著, 『英國의 社會福祉』,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79.

社會保障制度的 比較考察에 있어서는 北歐 5個國 등에서는 스웨덴의 制度가 擧論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것은 아마도 同國이 기타 北歐國家에 비하여 보다 잘 外部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基因할 수도 있겠으나 또한 이 國家의 社會保障 내지는 社會福祉制度가 가장 발달된 것이라고 이를 想定하는 것인지도 모른다.<sup>(2)</sup> 그러한 점에서 本稿에서는 同國 社會保障制度的 考察에 있어 資料가 許容하는 한에서 隣接國인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制度와 比較・檢討하여 尙前者和 後者間에는 실질적인 隔異가 있는 것인가를 檢證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제 5 공화국 憲法에도 社會保障制度和 동시에 社會福祉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거니와, 적어도 部分的이라도 社會保障制度가 실시되고 있는 國家에서는 또한 社會福祉 施策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保障과 社會福祉의 諸施策을 區分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理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社會保障制度 자체가 各國에 特有한 歷史的, 經驗的인 所産으로 그 內容이나 範圍에 관해서는 아직도 意見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른 하나의 要因은 社會保障과 社會福祉制度는 相互 補完的인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더 나아가서는 不可分的인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兩者를 區分하는 것은 不完全性 내지는 人爲性을 露呈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社會保障과 社會福祉制度的 긴밀한 關聯성은 스웨덴을 포함한 北歐 5個國의 경우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는 社會保障制度的 側面에 限定하여 스웨덴의 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隣接國家의 制度와 比較・考察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음의 論據에 立脚한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保障과 社會福祉制度的 區分 또는 社會保障制度的 內容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意思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兩者의 區分 또는 社會保障의 概念 定立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後者에 관한 一般的인 合意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範圍內에 있어서

(2) 스웨덴에서는 그 居住者는 물론이고 旅行者라도 發病時에는 全액 無償의 治療를 받는다고 보통 인식되고 있는 바, 아마도 이것이 同國의 制度가 가장 완벽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緣由인지도 모른다.

(3) G.R. Nelson and others, ed., *Freedom and Welfare*.

의 社會保障制度는 그 내용상 상당한 具體性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社會福祉의 내용이나 범위는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인 것이며, 이는 다른 隣接國家도 그러하거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社會福祉制度의 모든 側面을 檢討한다는 것은 제한된 資料, 時間과 紙面을 가지고는 매우 皮相의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福祉制度와의 分離, 考察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人爲性, 不安全性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社會保障制度만을 檢討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스웨덴을 포함한 北歐五個國의 경우는 社會福祉와 社會保障制度 사이의 關聯性이 보다 긴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매우 개괄적이기는 하나 社會保障制度의 구체적인 檢討에 앞서 스웨덴 내지는 北歐五個國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를 포함하여 社會福祉活動 全般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이들 國家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는 이러한 社會福祉 施策을 背景 또는 基盤으로 하고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그 目的이 있음은 물론이다.

## II. 스웨덴과 기타 北歐國家에 있어서의 社會保障 및 社會福祉制度

### A. 社會福祉制度

1. 여타의 北歐諸國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나 스웨덴에서도 매우 광범한 社會福祉活動이 전개되고 있는 바, 이들 活動은 社會保險과 公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制度는 이들 兩者를 補完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國家에서 발표되는 몇 가지 資料에 基하여 광범한 社會福祉活動을 살펴 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中央統計局에서 發刊되는 資料에서는 社會福祉活動은 다음의 七部門으로 區分되고 있다. (<表 1> 참조)

이들 七部門은 疾病, 勞動災害·産業安全, 失業, 老令·癡疾 등, 家族·兒童, 一般扶助 및 軍隊·戰爭傷害에 대한 給與이며 그 各部門에 또한 各種 活動이 表示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活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社會保險과 公的 서비스가 給與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事態에 對處하는 役割을 수행하고 그 이외의 給與나 서비스는 주로 日常生活에 關한 것으로 社會

〈表 1〉 社會福祉活動의 分類

|                         |                 |
|-------------------------|-----------------|
| I. 疾病                   | 2. 一般的 補充年金     |
| 1. 疾病保險·類似한 扶助          | 3. 心身障害者給與      |
| 2. 一般的 保健서비스·病院醫療·助產서비스 | 4. 老人홈          |
| 3. 精神薄弱者醫療              | 5. 老人受給者홈       |
| 4. 國營齒科醫療서비스            | V. 家族·兒童        |
| 5. 알콜中毒患者福祉             | 1. 母親 및 幼兒福祉    |
| II. 勞動災害·産業安全           | 2. 一般的 兒童手當     |
| 1. 雇用傷害保險               | 3. 兒童手當支拂       |
| 2. 産業安全                 | 4. 公的 兒童福祉      |
| III. 失業                 | 5. 學校給食         |
| 1. 失業保險·諸給與             | 6. 홈레벨 서비스      |
| 2. 職業紹介·職業指導            | 7. 全般的인 家政援助貸付金 |
| 3. 失業者의 再訓練             | 8. 大家族住宅手當      |
| 4. 公共事業·企業에의 地域手當       | 9. 기타 서비스       |
| IV. 老齡·廢疾 등             | VI. 一般扶助        |
| 1. 老齡年金·早期年金            | VII. 軍隊·戰爭傷害    |

資料: Nationa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Cost and Financing of the Social Services.*

保險이나 公的 서비스를 補充하고 있다. 이와 거의 對等한 社會福祉活動이 餘他北歐諸國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바, 北歐五個國이 共同으로 發表하는 社會福祉活動에 관한 資料에서도 前記한 形態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이들 국가의 社會福祉活動이 정리되고 있다.<sup>(4)</sup> 또한 이들 國家에서도 保護를 필요로 하는 事態에 對處하는 社會保險과 公的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日常生活에 關連된 給與나 서비스는 이들에 대한 補充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 어느 國家에 있어서도 社會扶助에 속하는 一般扶助의 役割은 매우 制限的 이다.<sup>(5)</sup>

2. 스웨덴에서 매년 出刊되는 다른 資料에 의하면 社會福祉活動에 의한 各種의 社會的 給與는 정상적인 日常生活에 필요한 給與 및 서비스와 保護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支給되는 給與로 大別되고 있다.

본래 社會保障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事態에의 對處를 그 주된 役割로 하

(4) *Social Security in the Nordic Countries.*

(5) 平石長久 등 共著, 『歐美의 社會保障制度』, p. 155.

〈表 2〉 社會的 給與

|                |                 |
|----------------|-----------------|
| I. 正常的인 日常生活   | 1. 疾病·災害: 醫療서비스 |
| 1. 兒 童         | 2. 疾病·災害: 現金給與  |
| 2. 教 育         | 3. 勤勞不能         |
| 3. 雇用서비스       | 4. 家長의 死亡       |
| 4. 結婚·出產       | 5. 勞動災害         |
| 5. 住 宅         | 6. 失 業          |
| 6. 老 齡         | 7. 法令에 의한 援護    |
| 7. 家政援助        | 8. 軍人對策         |
| 8. 主婦休暇        | 9. 特別扶助         |
| II. 保護가 필요한 경우 |                 |

資料: A.J. Gilderson and E. Marshall (ed.), *Social Benefits in Sweden*.

는 것으로 정상적인 日常生活에 필요한 給與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는 社會福祉活動分野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資料에 나타나고 있는 二大分類의 경우 後者가 社會福祉活動分野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前者의 給與中에는 一般觀念上으로는 社會保障分野에 속하는 出產, 老齡 등의 給與가 포함되고 있는 바 이 分類에서는 出產이나 老齡이 社會的으로 특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事態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日常的인 一般的인 狀態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資料의 경우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내용 보다는 社會福祉活動이 일반적인 日常生活에 관한 給與나 서비스와 특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給與의 二大範疇로 區分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3. 北歐五個國의 社會福祉活動에 관한 한 代表的 著書에서는 이들 國家에서의 關係施策으로서 다음의 諸要素가 舉示되고 있다.<sup>(6)</sup>

#### A. 家族福祉

1. 結婚: 結婚貸付金, 家政管理教育
2. 妊娠·出產: 產前서비스, 勤勞婦人의 保護, 分娩施設, 新生兒死亡, 流產 등의 豫防
3. 分娩費用
4. 兒童의 集團的 保護: 健康診斷 등, 學校給食, 晝間兒童保育, 休暇制度

(6) Nelson and others, ed., *op. cit.*

## B. 社會保障

1. 社會保險：健康保險，失業保險，老齡年金，廢疾年金，遺族給與，雇用傷害保險
2. 社會扶助：一般扶助，老齡扶助，兒童扶助

## C. 保健·리하비리테이션

一般的인 保健·衛生  
醫療

病院：一般病院，特殊病院

主要疾患對策：傳染病，結核，암，性病，카리에스，알콜中毒

心身障害者의 看護와 리하비리테이션：一般的 對策，特殊그를對策

이상에 列擧된 것은 매우 廣範한 것으로 北歐五個國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광범한 社會福祉活動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社會保障制度는 이러한 광범한 公的 社會福祉와 公的 醫療서비스와 같은 公的 서비스制度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社會保險을 組成하여 이들 兩者의 組合關係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社會扶助는 社會保險을 補充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 制度를 勞使間의 交渉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制度가 補充하고 있는 것이다.

4. 國際勞動機構에서 出刊되는 한 資料는 社會保障制度의 活動範圍로서 醫療·疾病·出產給與，老齡·廢疾·遺族給與，失業給與 및 家族手當이 列擧되고 있다.<sup>(7)</sup> 이러한 基準에 따라 前述한 광범한 社會福祉活動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廢疾·出產 疾病과 出產에 대한 諸給與는 健康保險과 齒科保險의 社會保險 및 公的 醫療서비스에 의한 一般醫療，病院醫療，分娩과 그 前後의 서비스 및 齒科醫療가 중심이 되며 이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支給된다. 이들 이외에 日常生活과 관련된 保健서비스 및 精神薄弱이나 알콜中毒 등에 대한 對策이 補充的으로 실시되고 있다.

(2) 老齡·廢疾·家長의 死亡

이에 대해서는 年金保險(定額의 基本年金과 所得比例의 補充年金)이 중심이 되고 이 保險에 身體傷害나 老齡에 대한 各種 補充의 結與가 附加支給

(7) ILO,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1970.

된다. 또한 年金保險은 老人홈이나 年金受給者홈 등의 서비스나 給與로 補完되고 있다.

### (3) 勤勞災害·職業病

이에 대해서는 雇用傷害保險이 對應措置로 실시되고 있는 바, 公的인 社會保險 뿐만 아니라 商業保險도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保險制度를 産業安全 등에 의한 災害發生 豫防措置 및 職業指導, 訓練 등의 措置가 補完하고 있다.

### (4) 失 業

이에 任意制의 失業保險이 중심적인 制度로 對應하고 있으며 同保險을 失業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職業紹介, 職業指導, 職業再訓練 등의 公的인 서비스가 補完하고 있다. 또한 失業保險의 保險者인 勞動組合도 대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公的인 制度로서의 社會扶助制度가 失業保險을 補完하고 있다. 이 외에도 失業者에 대한 간접적인 支援手段으로서 雇用促進을 위한 公共事業이나 企業에의 地域手當制 등의 公的인 措置가 실시되고 있다.

### (5) 家族·兒童

이 部門에 있어서는 兒童手當이 基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 手當은 前拂도 인정되고 있다. 이 외에 일종의 家族給與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子女 내지는 기타 家族數가 많은 世帶에 대한 住宅手當制度는 補完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타 一般的인 社會福祉活動으로서 母親과 幼兒에 대한 母子福祉와 兒童福祉 등의 정상적인 日常生活에 관련된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國民學生에 대한 學校給食制度, 家政援助를 위한 홈레벨 서비스, 家政援助貸付金制度 등의 措置도 실시되고 있다.

(6) 기타 前述한 各種의 給與나 서비스 외에도 社會扶助에 속하는 一般扶助나 戰爭이나 軍服務에 따라 발생한 傷害의 補償 등이 公的인 制度로서 실시되고 있다.

이상에 列擧된 各給支部門은 이를 다시 基本的인 役割을 수행하는 制度와 그를 補完하는 制度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一面에 있어서는 이들이 광범한 社會福祉活動을 전부 網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例컨대 이들 중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結婚貸付金, 獎學金制度나 기타 教育援助, 家庭主婦에 대한 諸般施策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他面에 있어서는 前示한 活動 또는 施策이 모든 社會保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社會保障의 觀念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도 見解가 상당히 갈리고 있는 것이고 各國의 實定制度도 그 保護範圍에 있어 상당한 隔差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應의 多樣性, 相異性에도 불구하고 實定制度를 종합적인 比較·考察하는 경우 그 保護範圍나 運營 또는 機能面에 있어 一定限度の 共通性이 導出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상대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制度的 側面에서의 共通性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의 觀念 내지는 範圍를 정의하고 그 限度에서 스웨덴의 現行制度를 隣接國家의 制度와 比較·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B. 社會保障制度的 觀念 및 範圍

1. 各國의 社會保障制度는 既述한 바와 같이 이들 國家의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인 諸條件을 背景으로 하면서 歷史的 所產으로서 生成, 發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制度가 국가에 따라 그 內容이나 範圍가 상이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 할 것이다.

社會保障制度는 또한 國民의 所得水準 또는 生活水準에 따라 현재도 계속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所得·生活水準의 變化에 따라 市民生活의 패턴이 多樣化하고 또한 高次化하면 市民의 欲求도 그에 相應하여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社會保障制度의 質的, 量的 變化가 要請되어 그 概念이나 範圍도 變化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前述한 두 가지 理由에 기인하여 社會保障의 概念이나 範圍에 관하여 各國에서 또는 國內에서도 여러 가지 見解나 主張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社會保障의 形成·發達は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흐름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구라파의 一定國家에서 실시되어 오던 救貧活動이며 그 다른 하나는 相互扶助原理에 입각한 經濟活動이다. 中世의 敎區單位의 救貧活動에서 출발하여 그 후 自治團體로 移行되고 다시 國家에 委記된 前者는 貧困에 대처하는 地域社會의 責任에 의존하는 形式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中世 職人社會에 있어서의 相互扶助活動에서 育成되어 온 後者는 生計에 대한 위협적 요소인 社會的 危險(risque social)에 對處하는 特定集團의 社會連帶意識에 의존하면서 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兩者는

共히 個人의 責任을 集團의 責任으로 移行시키는 것으로 그 根底에는 相互扶助와 社會連帶原理가 개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兩者間에는 集團의 責任을 地域社會에 分散시키는가 또는 自主的인 特定그룹에 分散시키는가의 근본적인 相違點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後者は 勤勞者 그룹에 의한 職域保險(被用者保險)으로 形成되어 그 후 이러한 社會保險은 特定그룹 이외의 者에도 擴大되어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國民을 포함하는 制度로 발전되게 되었으며 前者는 地域保險(住民保險)으로서 그 適用對象者의 擴大方向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社會保險의 形成·發達過程上의 두 가지 類型中에서 前者는 프랑스, 독일 등의 國家에, 後者は 英國, 北歐諸國에 定着, 發達하여 왔던 것이다. 前述한 過程을 거쳐 한편으로 社會保險이 발달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責任에 의한 公的 서비스가 발달하고 또한 地域社會의 責任이었던 救貧對策에서 發達한 社會扶助와 社會保險 등도 社會保障의 形成·發展에도 불구하고 그 活動이 계속 또는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保險, 社會扶助 및 公的 서비스가 廣義의 社會福祉活動을 形成한다고 할 때, 社會保障의 概念이나 範圍에 관한 見解의 對立은 기본적으로는 社會扶助 및 公的 서비스에 대한 獨自性的인 인정 여부 및 그 範圍 여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에서 우리는 社會保障의 觀念 또는 그 範圍에 관한 各國의 實定制度上의 多樣性이나 그에 관한 見解의 對立에 있어서의 基本要因 및 그 決定要因에 관하여 概觀하여 보았거니와, 다음에서는 이에 관한 몇 가지 見解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社會保障의 範圍를 年金制度에 한정시키는 見解가 있다. 이것은 스웨덴의 다수의 社會保障關係, 專門家들의 見解로 이들은 前述한 바 있는 同國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범한 社會福祉活動 중에서 年金保險만을 그 고유한 分野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것은 社會保障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반하여 美國의 社會保障法은 老齡, 遺族, 廢疾, 健康保險, 失業保險, 公的扶助, 母子福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同國에서도 엄격한 의미의 社會保障의 範圍에 이들 活動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8) 平石長久 등 共著, *op. cit.*, p. 159.

그것은 同國에서 출판되는 公的 出版物에서도 前記한 活動의 一部를 제외하고 그 대신에 다른 一定給與를 포함하여 社會福祉活動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同國의 社會保障廳이 발표하는 公式資料는 社會保險, 公的 扶助, 保健·醫療, 退役軍人恩給制度에 다시 教育, 住宅과 기타 一定活動을 포함하여 이를 社會福祉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더 나아가 이미 言及한 바 있는 北歐五個國의 共同刊行物에서는 社會保障이라는 項目下에서 이들 保健, 勞動災害·勤勞者保護, 失業, 老齡·廢病, 家族福祉, 一般扶助, 軍人·戰爭犧牲者援護, 兒童에 대한 租稅對策의 8部門으로 大別하여 각각의 活動을 列擧하고 있다.

그러나 이 資料에서 한결같이 「社會保障」이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 內容에 租稅對策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細分된 各項目에는 勤勞者保護, 失業者救濟의 公共事業, 老人홈이나 年金受給者의 住宅, 保育園, 國民學生給食, 多子家庭에의 주택(임대비용), 主婦와 아동 휴가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는 社會保障給與에서는 제외되는 項目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스웨덴에서 出刊되는 한 資料는 同一項目을 「社會서비스」로 分類하고 있다.<sup>(10)</sup> 筆者도 이들 項目은 「社會保障」이라기 보다는 「社會서비스」로 表示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前述한 廣範한 活動은 社會保障이라는 用語 이외의 다른 用語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國家의 通常의 事例인 것이다.

(3) 위에서 우리는 社會保障制度가 各國에 특유한 歷史的 所産이며 또한 그것은 動的인 制度라는 두 가지 基本적 理由에 基因하는 結果로서의 同制度에 관한 몇 가지 見解를 檢討하여 보았다. 아울러 筆者는 이들 見解는 社會保障의 觀點을 혹은 지나치게 狹義 또는 廣義로 파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社會保障이란 用語는 實定制度 또는 學說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多樣性 내지는 相異性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各國의 實定法 및 國際宣言·條約 등을 比較·檢討하여 보면 그것은 一般적으로는 보통 「社會的 危險(risque social)」으로 정의되는 一定事態의 發生 結果에 대한 補償制度로서 사용되고

(9)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under Public Programs, 1929~1966.*

(10) *The Cost and Financing of the Social Services*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前述한 「社會的 危險」으로서의 다음 事項이 列擧되고 있다. <sup>(11)</sup>

① 疾病, ② 妊娠, ③ 廢疾, ④ 老齡, ⑤ 勞動災害·職業病, ⑥ 死亡, ⑦ 家族負擔, ⑧ 失業

따라서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가장 간명한 定義는 이상의 諸事態의 發生 결과의 補償을 위한 특수한 法體系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어느 정도 體系化하면 社會保障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社會保障制度는 어떠한 非自發的인 事故에 의하여 所得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을 一時的 또는 永久的으로 상실한 경우에 喪失所得의 一節(국가에 따라서는 全部)를 補償하고 필요한 醫療를 제공하고 또한 家族을 부양하는 者에 一定形式으로 그 所得을 補充하여 주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前述한 社會保障의 追求目的은 이를 換言하면 各者의 經濟的 安定의 保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經濟的 安定의 保障 목적은 實定制度의 運營에 있어서는 財政的 再分配 즉 被保險者에 대한 保險料의 徵收와 그 資金의 受惠者에의 分配에 의하여 達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保障은 制度的 觀念에서는 被保險者의 經濟的 安定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所得의 再分配制度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sup>(12)</sup>

### III. 스웨덴의 現行社會保障制度

#### — 隣接國家와의 比較考察 —

위에서 우리는 社會保障의 觀念을 關係國際條約·宣言 및 各國의 制度의 比較·考察에 의한 方法, 즉 制度的 觀點에서 定義한 바 있다.

이러한 本稿에서의 社會保障의 觀念은 國際勞動機構(ILO)의 定義와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國際勞動機構는 既述한 바와 같이 社會保障制度의 活動範圍로서 疾病·出產給與, 老齡·廢疾·遺族給與, 勞動災害給與, 失業給與 및 家族手當을 擧示하고 있는 바, 本稿에서도

(11) 1952년의 社會保障條約도 同一項目을 열거하고 있다.

(12) 社會保障의 制度的 觀念에 관해서는 拙著,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社會科學研究所, 1980, pp. 1-5 參照.

대체로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스웨덴의 現行制度를 檢討하려고 한다.

### A. 醫療保險

가. 스웨덴의 制度

醫療保險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被保險者 또는 그 近親者의 疾病으로 인한 醫療費 또는 準醫療費의 支出에 被保險者가 代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다른 하나는 疾病(또는 業務外事故)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勞動不能상태에 처하게 된 被保險者의 賃金損失을 現金支給 형식의 代替所得으로 補償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醫療保險의 二大機能 중에서 前者에 對應하는 것이 現物給與이며, 後者に 상응하는 것이 現金給與制度이다.

#### 1. 現物給與

(1) 國內外 居住의 16歲 이상의 모든 스웨덴인은 그 受惠者가 된다. 16歲 이하의 子女는 그 父母의 保險에 포함되어 制度의 적용을 받는다.

外國人·無國籍者도 스웨덴에 居住하고 敎區事務所에 登錄되어 있으면 現物給與를 受給할 수 있다.

(2) 現物給與는 外來治療, 入院治療, 齒科醫療, 療養給與, 物理治療, 藥濟費償還 및 病院訪問時 등의 交通費補償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醫療保險의 여러 가지 現物給與는 완전히 無償으로 支給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例外를 제외하고는 被保險者가 그 所要費用의 一部를 支拂하는 소위 一部負擔制가 적용되고 있다. 이 一部負擔制는 그 負擔率의 高下 또는 그에 대한 例外의 廣狹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國家에서 共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① 外來治療時의 一部負擔額은 그것이 公共病院에 대한 것인가 私設開業醫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被保險者가 20크로네를, 後者の 경우는 30Kr를 負擔하여야 한다.<sup>(13)</sup> 兩者의 경우 共히 醫療保險에 의한 償還額은 93Kr로 되어 있다(1978. 1. 기준). 이러한 一部負擔制는 기타의 경우, 例컨대 醫療 또는 往診, 電話에 의한 指導나 指示, 렌트겐診斷 등에도 公共病院과 私設醫의 경우 각기 다른 額이 적용된다.

外來治療에 있어서의 給與支給方式은 그것이 公共病院인가 私設病院인가

(13) 1979년 현재 스웨덴의 1kr.와 美貨의 換率은 1kr: 22.6 cents이었다.

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한다. 私設病院의 경우는 原則적으로 被保險者가 醫療費全額을 支拂한 然後에 醫療保險이 一部負擔額을 公제한 金額을 상환하여 주는 엄격한 의미의 償還方式이 채택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公共病院의 경우는 被保險者는 一部負擔額에 상응하는 金額만을 支拂하고 殘餘額은 醫療保險이 직접 當該醫療機關에 支拂하는 소위 第三者支拂方式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는 入院治療, 이외의 기타 現物給與에도 原則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 ② 入院治療

入院治療는 해당病院이 公共病院인가 私設病院인가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한다.

公共病院에의 入院時는 被保險者에 대한 醫療는 無料이다. 이 점에서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가 社會保險制度和 公的 서비스가 組合的으로 實施되고 있다는 側面이 가장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私設病院에의 入院時는 前者와는 달리 被保險者인 患者는 醫療費의 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現物給與와는 달리 醫療保險이 一部負擔額을 포함한 所要經費 일체를 醫療機關에 직접 支拂하는 소위 第三者支拂原則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醫療保險은 被保險者인 患者의 現金給與額 중에서 日當 30Kr를 一部負擔額으로 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控除額이 現金給與額의 2/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최소 8Kr는 當事者에게 現金給與로 支給되어야 한다. 이것은 低所得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다. 入院中이라도 醫師의 허락을 받아 家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前述한 一部負擔額은 公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往復에 소요되는 交通費는 病院에서 支給된다.

公共病院이나 私設病院을 막론하고 入院期間上의 制限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만 70세 이상의 老人 또 그 이전에 老齡年金 또는 早期(老齡)年金을 受給하는 者의 경우에는 無料入院期間은 1年으로 制限되어 있고 그 이후는 매일 30Kr씩 支拂하여야 한다.

③ 齒科醫療는 16歲 이하의 兒童에는 無料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는 國民學生이 그 對象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醫療保險에 있어서의 既述한 바의 公的 서비스 側面에 속하는 것이다.

17歲 이상의 者는 齒科醫療費의 一部를 支拂하여야 하는 바, 그 負擔率은

통산 전체 費用의 50%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費用이 1,000Kr를 넘는 경우에는 그 超過分에 대해서는 1/4만이 本人負擔으로 된다. 또한 豫防的 處置나 義齒의 경우에도 患者는 費用의 1/4만을 負擔하고 그 나머지는 地方社會保險事務所가 支拂하여 준다.

일정한 경우, 예컨대 先天的으로 또는 사고로 얼굴이나 턱이 잘못되었을 때, 그 矯正을 위해서 義齒를 넣거나 또는 手術을 받는 경우에는 그 費用을 전부 社會保險事務所가 支拂한다.

④ 疾病으로 인하여 療養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 60日의 期間內에서 醫療保險의 補償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療養은 擔當醫의 指示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保險廳이 승인한 療養所에서 요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⑤ 疾病, 出產 등과의 關係에서 病院, 療養所 등을 방문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經費, 交通費의 一部는 醫療保險에서 償還된다. 이 경우 原則的으로는 目的地까지의 到達에 있어서의 가장 저렴한 交通手段이 기준이 되는 것이나, 應急患者인 경우는 택시나 엠프란스를 利用할 수 있다. 이러한 交通費補償에 있어서의 自己負擔額은 10Kr이다.

重患者, 老齡患者 등의 경우와 같이 病院訪問에 있어 他人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도 償還되고 있다. 또한 10歲 미만의 兒童이 入院한 경우에 그 父母가 病院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交通費도 補償되고 있는 것이다.

⑥ 藥濟費에 관해서는 醫師나 齒科醫師가 處方한 藥品을 藥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醫療保險에 의한 補償의 惠澤을 받는다. 그 補償 내용은 다음과 같다. 藥濟費中の 10Kr는 本人負擔으로 되어 있고 그 殘餘額은 本人과 醫療保險間에 均分되는 것이나, 40Kr를 초과하는 部分은 100% 補償되는 것이다. 따라서 醫師의 處方에 基한 藥品의 1回 購入時의 本人負擔額은 25Kr를 초과하지는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一部負擔額은 西獨의 2.5DM에 비하면 상당히 高額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歐洲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慢性疾患의 治療에 필요한 藥品이나 一定高價藥品은 無償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保險廳은 無料로 藥品이 제공되는 疾病리스트를 各藥局에 배포하여 患者들의 利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2. 現金給與

現金給與制度는 疾病·出産에 다른 勤勞不能으로 인한 喪失所得의 補償을 그 目的으로 하는 것임은 既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스웨덴에 있어서는 後者에 관해서는 1974年 이래 그 受惠對象을 妊産婦에 限定하지 아니하고 夫婦에 擴大하고 또한 그 受給條件도 出産에 限定시키지 아니하고 10歲 미만의 子女의 疾病의 介護의 경우에도 擴大適用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를 兩親保險으로 別稱하기도 하나, 이 制度도 醫療保險의 一環으로 實施되는 것이고 보면, 本稿에서도 同制度를 醫療保險의 現金給與制度의 一部로 取扱하기로 한다. 다만 疾病에 대한 現金給與制度和 前述한 制度는 상당히 그 내용을 달리 하므로 前者를 傷病의 手當金, 後者를 兩親保險으로 稱하고 또한 각각 項을 달리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 2.1. 傷病手當金

現金給與는 原則적으로 年所得 4,500Kr 이상인 者에 限定된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대부분의 主婦와 被扶養者인 男便이 그 受惠者로 되며 支給額은 日當 11Kr이다(1980.5 기준). 現金給與에는 1日間の 待機期間이 적용되어 發病初日부터 週七日間 支給되며 發病中인 한 期間의 制限은 없다. 다만 年金受給者는 1回當 180日로 제한되어 있다.

現金給與額은 從前所得의 91%로 되어 있다. 그러나 給與의 算出基礎額은 上限線과 下限線이 있다.

下限線은 前述한 年所得額인 4,500Kr이며 上限線은 物價指數를 감안하여 每年初 國會에서 單身年金受領者의 最少生活費로 策定한 基本額의 7.5倍에 相當하는 額이다. 따라서 이 上限線을 초과하는 所得部分은 現金給與 算定 基礎額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實例를 보면, 1977. 1에 策定된 基本額은 10,700Kr이었다. 그에 따라 上限額은 그의 7.5倍인 80,200Kr로 算定된 것이었다.

現金給與額은 日當으로 算出되므로 그것은 上下限附 從前所得의 90%를 365로 나눈 몫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前述한 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年所得이 下限線인 4,500Kr인 者는 日當 11Kr를, 그리고 年所得이 上限線인 80,200Kr 이상인 者는 日當 198Kr를 現金給與로 支給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傷病手當金은 課稅의 대상이 되며 또한 후술하는 附加年金算定の

基礎가 된다. 이에 反하여 前述한 家庭主婦들에 支給되는 日當 11Kr의 現金給與는 課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無所得家庭主婦와 마찬가지로 學生도 發病時는 日當 11Kr를 支給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다 高額의 現金給與를 受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任意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任意保險에서는 少額의 保險料로 納付하고 日當 最高 20Kr의 범위 내에서 前記한 8Kr 이외에 附加給與를 受給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學生은(6個月 이상의 教育이나 훈련을 받는 者도 포함) 發病後 14日째부터 現金給與를 受給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主婦는 이러한 待機期間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그 期間은 3日, 18日, 33日 및 93日의 4種이 있으며, 그 期間이 짧을수록 受惠者의 保險料는 높아진다.

이러한 任意保險 이외에도 주로 老齡年金受給者 등을 대상으로 한 現金給與의 특수한 任意保險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 保險에는 1954年 末까지, 公的 疾病保險이 1955年에 實施되나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던 公認疾病保險 組合에 가입하고 있던 者가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特殊保險의 現金給與는 1975年 6月末까지 支給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재는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年所得 4,500Kr 이상인 者에 대한 現金給與는 원칙적으로 發病翌日부터 支給된다는 것은 既述한 바 있거니와, 그에는 發病事實의 地方保險事務所에의 申告라는 前提要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申告節次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現金給與日이 늦어지는 것이다.

發病後 첫 一週間은 醫師의 診斷書 없이도 現金給與를 受給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診斷書を 提出하여야 한다.

經營業者의 경우는 앞의 主婦와 마찬가지로 現金給與日을 3日, 18日, 33日 또는 93日 중에서 選擇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自營業者가 이러한 選擇을 하지 아니하고 一般勤勞者와 마찬가지로 發病翌日 부터의 現金給與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保險廳에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있어서는 申請者가 건강하고 滿 55歲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發病中에는 申請할 수 없다.

만 65세 미만의 者가 病 또는 기타의 理由로 長期的인 勤勞不能狀態에 處하는 경우에는 保險廳은 治療 또는 그 이외의 方法으로 그 勤勞能力의 全部 또는 一部를 再生시킬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그러한 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判定되는 때에는 早期年金을 받도록 조치한다.

現物給與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나 現金給與의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給與額을 減少하거나 또는 전혀 拒否할 수 있다.

- ① 의도적으로 病을 自招하거나 또는 自傷을 입은 경우
- ② 有罪判決을 받은 犯罪行爲 중에 입은 傷處 또는 그로 인하여 病을 앓게 되는 경우
- ③ 醫師의 診療 또는 그 處分을 거부하거나 健康管理를 크게 태만히 하는 경우
- ④ 支給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偽證하는 경우
- ⑤ 保險廳에서 病狀을 확인할 목적으로 과견한 사람의 訪問을 거부한 경우
- ⑥ 發病中에 保險廳에의 申告없이 居住地를 이탈하거나 또는 外國旅行을 하는 경우
- ⑦ 再活訓練을 거부하는 경우 등<sup>(14)</sup>

## 2.2. 兩親保險

통상적으로 出産에 관련된 現金給與는 妊産婦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既述한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1974년의 關係法の 改正에 의하여 그 受惠者를 夫婦로 擴大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 支給條件도 出産에 限定하지 아니하고 10歲 미만의 子女의 發病時에 그 介護에 當하는 父母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兩親保險으로 呼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兩親保險에 있어 10歲 미만의 子女의 發病時의 그 介護에 當하는 父母에 支給되는 現金給與는 本來的 의미의 父母는 물론이고 法的, 入養에 의한 父母와 地方自治團體의 兒童福祉委員會가 養育을 委囑한 夫婦에도 적용된다.

出産時에는 女性勤勞者가 分娩 또는 그 豫定日 이전에 270日間 被保險者 이었던 것을 條件으로 하고 또한 分娩豫定日 60日 前에 申告하면 現金給與가 支給된다.

給與의 支給期間은 分娩豫定日 60日 전부터 計算하여 최고 180日間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留意할 것은 1974년의 法改正에 의하여 前述한 180日間の 期間中에서 出産後의 殘餘期間에 있어 出産한 妻가 비교적 就勞하고 그 대신에 夫가 休務하고 乳兒를 돌보기로 決定하는 경우에

(14) 文石南,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福祉國家的 社會政策과 社會保險을 중심으로—,” 全南大論文集, 1980, p. 51.

는 夫의 休暇가 인정되어 當人의 所得에 따른 現金給與가 支給된다는 點이다.

前述한 出產給與에 附加하여 出產한 子女가 滿 8歲에 이르기까지는 最久 90日의 期間內에서 父母中 1人이 가정에서 子女를 돌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現金給與가 支給됨은 물론이다.<sup>(15)</sup> 다만 그 給與額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최초의 30日間과 이후의 期間에 따라 달라진다.

入養과 委囑養育의 경우에는 當該兒童의 年齡이 8歲 미만인 경우에는 出產의 경우와 같이 180日間, 10歲 미만인 때는 45日間에 걸쳐 後述하는 出產時의 現金給與額과 동일한 金額이 支給된다.

前述한 出產, 入養 등과는 별도로 10歲 미만의 兒童을 養育하는 모든 父母는 어린이가 일시 病을 앓거나 또는 診斷, 治療를 받기 위하여 病院 등에 帶同하여야 하는 관계로 出勤할 수 없는 場合가 있다는 點을 勘案하여 年間 一定期間은 現金給與를 受給하며 家庭에서 兒童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구체적 期間은 다음과 같다.

① 10歲 미만의 兒童이 1名이 있는 가정에는 父母中 1人에 대하여 年間 最久 12日

② 10歲 미만의 兒童이 2名이 있는 가정에는 父母中 1人에 대하여 年間 最久 15日

③ 10歲 미만의 兒童이 3名 이상인 가정에는 年間 最久 18日

이 期間內에 支給되는 現金給與는 醫療保險의 現金給與額과 동일하다.

前述한 出產給與와 入養, 委囑養育時에 支給되는 給與額은 그 最低額이 日當 32Kr로 있다(1980 基準).<sup>(16)</sup> 이것은 勤勞所得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年所得額이 4,500Kr 이하인 者에게 支給되며 課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最低額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으로 그것을 醫療保險上의 最低給與額(11Kr)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것은 後者의 경우에는 年所得 13,200 Kr인 者에 대한 現金給與額에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兒童의 介護에 當하는 父 또는 母의 日所得이 13,200Kr 이상인 경우에는 그를 出產, 入養, 委囑養育日의 270日前에 保險廳에 申告를 必해야 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15)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0, p.227.

(16) *Ibid.*

하여 그 申告額에 상당한 日當 32Kr 이상의 現金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것이다.

出産과 관련되어 그 子女가 8歲에 이르기까지 最高 90日間 夫婦에 인정되는 現金給與는 最初 30日間に 대한 給與는 그 最低額이 32Kr가 된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60日에 대한 給與額은 醫療保險의 現金給與水準(최저 日當 11Kr)에 따르고 있다.

이상에 기술한 여러 가지 給與는 어느 것이라도 그 額이 日當 32K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課稅對象이 되며 또한 附加年金의 點數算出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 나.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

社會保障의 기타 部門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醫療保險制度의 경우 스웨덴과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에 있어서는 스웨덴과 政治的·經濟的 與件이 비슷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制度를 주로 論述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隣接국이 아닌 나라의 制度에 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隣接國家의 制度의 比較는 資料의 不充分性으로 상당히 片斷적인 성격의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醫療保險의 適用範圍에 있어서는 덴마크 및 노르웨이의 制度는 스웨덴의 制度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먼저 現物給與의 受惠者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自國內의 居住者로 되어 있다. 다음에 現物給與의 受惠者는 三國이 共同 一定額 이상의 所得者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國의 醫療保險制度는 그 適用범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給與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現物給與에 관해서는, 덴마크의 制度가 一應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인다. 同國에서는 醫師選擇의 一定制限下에서 無償診療가 행하여지고 있다.<sup>(17)</sup> 이에 대하여 醫師를 자유로이 選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診療費의 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이에 反하여 現金給與制度는 노르웨이가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現金給與는 從前所得의 100%로 되어 있으며, 待機期間

(17) *Ibid.*, pp. 62-63.

도 없다.<sup>(18)</sup> 다만 이 給與는 스웨덴이 週 7日인데 반하여, 週 6日 支給되며, 또한 日當 最高額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다. 또한 그 支給期間은 최고 312일로 되어 있다.

덴마크에서도 現金給與는 發病日부터 支給되나, 그 給與額은 從前所得의 90%로 되어 있다. 그러나 自營業者에 대한 現金給與는 원칙적으로 發病後 6 주째부터 支給되는 것으로, 發病日부터의 受給을 위해서는 별도로 任意 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醫療保險制度는 스웨덴의 制度에 비하여 財政的 側面에서 一應 特殊性이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發病後 초기 4주간의 現金給與에 대한 經費,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는 초기 10일간의 經費는 全的으로 使用者의 負擔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醫療保險機關의 財政的 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한 措置임은 물론이다. 같은 趣旨의 制度로서, 西獨에 있어서는 發病後 초기 6주간은 使用者가 從前賃金의 100%를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sup>(19)</sup>

이상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醫療保險制度上の 몇 가지 相違點을 살펴 보았으나, 이들은 기본적인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덴마크에 있어서는 現物給與는 원칙적으로 無償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第一範疇에 속하는 市民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이에 대하여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있어서도 公共病院에의 入院治療는 無償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國家間의 現物給與制度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차이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三國의 制度의 比較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隔差가 나타나는 것은 出產保險部門으로, 이 部門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制度가 당연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 있어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出產保險上の 現金給與期間은 최고 270일로 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10歲 미만의 아동의 介護와 관련된 最高 18일간의 現金給與期間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그 給與額에 있어서도 日當最低額은 疾病保險上の 最低額의 3배에 가까운 額으로 되어 있다.

(18) *Ibid.*, pp. 180-181.

(19) 拙稿, “한국, 프랑스 및 독일의 醫療保險制度의 比較考察,” 서울大學校, 『法學』, 1981, pp. 115-158.

(20) *Rapport d'information, Sénat, 1972~1973*, no. 286, pp. 72-73.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의 경우는 그 給與期間은 108일로 되어 있고, 그 給與額은 疾病保險上의 現金給與와 마찬가지로 從前所得의 100%로 되어 있으나, 스웨덴과 같은 出產保險에 특유한 最低給與額制度는 없다. 또한 10세 미만의 아동의 介護를 위한 現金給與制度도 없다.

다만 이 나라에서도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前記한 108日 中の 一定期間(72일)은 產母뿐만 아니라, 出產兒의 부친도 선택적으로 가정에서 아들을 돌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자신의 從前所得에 基한 現金給與를 支給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덴마크에 있어서의 出產保險上의 現金給與期間은 최고 14週로 되어 있으며 그 給與額은 從前所得의 90%에 상당하는 額이다. 이 나라의 경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와는 달리 出產 一定期間 이후에 있어서의 夫에 대한 新生兒 介護權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記述한 것은 1979. 4.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위 模倣效果(effect d'imitation)에 따라 조만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스웨덴式의 制度를 채택하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 B. 勞動災害補償

### 가. 스웨덴의 制度

#### 1. 概 說

勞動災害補償에는 公的인 強制的 社會保險과 私的인 商業保險이 이용되고 있다. 이 制度의 特殊性은 최초의 90日間에는 醫療保險에 의하여 補償이 支給되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給與만이 勤勞災害保險에서 支給된다는 점이다.

이 制度는 全被用者와 職業訓練學校에 就學中인 學生을 強制適用對象으로 하고 있다. 自營業者도 原則적으로는 強制適用對象에 포함되나 老齡年金의 附加年金制度의 適用을 拒否한 者는 이에서 배제된다.

이 制度에 있어 勞動災害로 간주되는 것은 職務와 관련되어 발생한 事故 및 職業病이다. 이 경우 事故는 通勤途上에 發生한 경우도 勤勞災害에 포함되는 것이다. 職業病은 물론 職場에 따라 상이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有害物質, 特殊光線, 機械의 振動·騒音, 溫度, 濕度, 光線 등으로 발생한 各種疾患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Social Security Programs...*, pp. 180-181.

勤勞者에게 前述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雇用主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雇用主는 同事實을 지체없이 保險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勞動災害補償의 支給에는 被保險期間上의 制限은 原則적으로 없다.

## 2. 現物給與

事故發生後 초기 90日間은 醫療保險에서 支給된다. 그러나 醫療保險上의 現物給與의 경우와는 달리 被保險者의 一部負擔制의 適用이 없고 所要費用은 地方社會保險事務所가 支拂한다. 90日 이후의 現物給與(醫療給與)는 勞動災害補償保險에서 支給되며 이 경우에는 所要經費는 同保險이 전부 支拂한다.

## 3. 現金給與

이 給與는 職業的 事故 또는 職業病으로 인한 勞動不能 정도가 臨時的인 가 永久的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달리하고 또한 同給與는 被害者의 死亡時 그 遺族에 대한 遺族給與도 포함하고 있다.

### (1) 臨時的 勞動不能에 대한 補償

事故 또는 職業病으로 인한 一時的 勞動不能 상태에 기인하는 所得喪失에 대하여는 다음의 現金給與가 支給된다. 우선 初期 90日間에 대해서는 醫療保險이 중진 所得의 90%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疾病에 대한 現金給與와는 달리 그 給與는 事故 當日 또는 職業病的 發病 當時부터 支給된다.

勞動不能期間이 90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傷害 또는 病的 完治時까지 또는 永久勞動不能 상태의 判定時까지 勞動災害補償保險이 從前所得의 10%를 支給한다. 다만 이러한 勞動災害補償에 있어서는 그 補償額算定基礎인 所得은 醫療保險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上限線과 下限線의 범위내의 所得을 의미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下限線 이하의 所得은 下限線의 所得額과 同額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上限線을 초과하는 所得分은 補償額算定基礎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것은 永久勞動不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永久的 勞動不能에 대한 補償

職業的 事故 또는 職業病으로 인하여 正常勞動能力이 최소 1/15 이상 低下되고 그 年所得額이 每年初에 査定되는 基本額의 1/4 이상 減少되는 경우에는 初期 90日 이후에는 勞動不能 정도에 상응하는 喪失所得의 補償을 받는다. 따라서 被害者가 完全勞動不能인 경우에는 前述한 上·下限額의 범위

내에서 從前所得의 100%를 補償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勤勞災害補償은 物價變動에 따라 自動調整된다. 또한 이 補償額은 감소된 勞動能力이 회복되거나 또는 惡化되는 경우에는 保險廳 專門人團의 審査를 거쳐 再調整되는 것이다.

勤勞災害補償은 年金受給開始年齡인 滿 65歲까지 支給되고 그 이후에는 老齡年金으로 대체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경우 老齡年金(基本年金 + 附加年金)이 補償額의 65%에 未達되는 것인 때에는 그 差額은 65歲 이후에도 계속 支給된다.<sup>(22)</sup>

勤勞災害補償保險에 의한 前述한 補償額은 課稅의 대상이 되며 또한 附加年金點數의 算定基礎가 되고 있다.

### (3) 遺族補償

勤勞災害로 被害者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다음의 給與가 支給된다.

#### ① 未亡人年金

여기서 未亡人이라 함은 合法的으로 結婚을 한 婦人 뿐만 아니라 長期間同居生活을 해 온 女性도 그 概念에 포함되고 있다. 그 年金額은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孤兒年金의 受給資格이 있는 16歲 미만의 子女를 1人 扶養하는 未亡人에는 亡夫의 年收入의 45%가 支給된다.

② 단 50세 이하의 子女의 有無에 관계없이 未亡人에는 夫의 年收入의 50%가 支給된다.

③ 36~49세의 未亡人으로 扶養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夫의 年收入의 45%가 支給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額은 50歲 未達의 各年度에 대하여 1/15씩 減額된다.

#### ② 孤兒年金

원칙적으로 19세 이하의 孤兒에는 父의 年收入의 20~40%에 상당하는 金額이 支給된다. 그러나 障礙者의 경우에는 그 受給年齡은 21세까지 연장된다.

被扶養者이었던 兩親에도 遺族年金이 支給되는 바, 그것은 최고 年收入의 20%에 상당하는 金額이다. 이 밖에 遺族에는 葬祭費로서 基本額의 30%에

(22) 文石南, *op. cit.*, p. 28.

상당하는 金額이 支給된다.

勞働災害補償保險에 의한 이상의 諸給與 이외에도 그 被害者에는 勞働福祉서비스로서 各種 對策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에는 勞働能力檢査에 대한 諸手當, 리ハビリ테이션訓練手當, 交通費, 生計費, 住宅費, 教材費, 授業費 등에 대한 諸手當, 心身障害者에 대한 自動車稅의 償還 등의 各種 給與나 서비스가 公的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勞働福祉分野에 속하는 것으로 狹義의 社會保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 나.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

勞働災害補償制度의 適用범위에 있어서 스웨덴의 경우는 自營業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強制保險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自營業者에 대해서는 任意保險方式이 적용되고 있다.<sup>(23)</sup>

勞働災害補償의 내용에 있어서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制度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미의 勞働災害 뿐만 아니라 職業病補償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前者에는 業務上의 事故와 出退勤途上의 事故도 포함되어 있다.<sup>(24)</sup>

補償은 그 내용상 暫定的 勞働不能狀態와 永久的 勞働不能狀態에 대한 것으로 區分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三國의 制度는 공통하다. 그러나 이 制度에 의한 給與의 內容이나 方法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의 制度와 덴마크의 制度는 스웨덴의 제도에 비하여 상당한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의 勞働災害補償制度에 있어서의 暫定的 勞働不能狀態에 대한 現金給與는 초기 52주간은 疾病保險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給與가 支給된다. 그러나 52주 이후에는 리ハビリ테이션手當이 勞働災害補償保險에서 支給된다. 永久的 勞働不能의 경우에는 그 勞働不能의 정도에 따라 給與額이 달라진다. 勞働能力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基本額이 전액 지급된다. (이를 完全年金이라 한다.) 勞働能力이 部分的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完全年金에서 그 喪失率에 상응하는 額이 支給되나, 그 不能도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一時拂이 지급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勞働補償制度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基本年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配偶者나 一定年齡 미만(18세)의

(23) *Social Security Programs...*, pp. 52-63, 180-181.

(24) *Rapport d'information, op. cit.*, pp. 75.

子女에 대해서는 補充手當이支給되고 있다. 이것은 同國에 있어서는 이 制度上의 年金이 老齡保險上의 年金과 同一視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는 단 65세에 老齡年金으로 轉換되기까지는 從前所得의 100%까지支給되는 스웨덴의 제도에 비해서는 給與水準이 낮다고 할 것이다.

永久的 勞動不能者가 老齡保險上의 附加年金의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에는 同年金を 受給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덴마크의 勞動災害補償制度에 있어서의 暫定的 勞動不能에 대한 現金給與는 疾病保險에 의하여 同保險上의 現金給與와 동일한 給與가支給된다.

永久的 勞動不能狀態에 대한 補償에 있어서는, 完全勞動不能狀態에 대한 補償額은 從前平均所得의 3/4에 상당하는 額이다. 部分的 勞動不能時에는 그 정도가 50~99%인 경우에는 前記한 完全年金에 當該稼得能力의 喪失率을 곱한 額이支給된다. 그러나 이 喪失率이 5~49%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金額이 一時拂로支給된다.<sup>(25)</sup> 이러한 一時拂制度를 제외한다면 덴마크의 制度는 스웨덴의 制度와 근사하다 할 것이다.

法定老齡年金의 受給年齡인 67세에는 勞動災害補償制度에 의한 年金은 老齡年金으로 代置된다. 이 경우 從前年金의 2年分에 상당하는 金額이 一時拂로支給되는 바, 이것은 老齡年金으로의 轉換時의 喪失所得을 補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勞動災害補償制度에 있어서도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同制度의 受惠者인 家長의 死亡時에는 遺族年金이支給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三國의 制度가 기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比較·檢討는 생략하기로 한다.

### C. 年金制度

#### 가. 스웨덴의 制度

##### 1. 概 觀

스웨덴의 年金制度는 老齡의 一定年齡부터支給되는 基礎年金과 附加年金(補充年金), 勞動能力의 低下 또는 喪失時에支給되는 廢疾年金(早期年金) 및 家長의 死亡時에支給되는 遺族年金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 중에서 基礎年金과 附加年金을 합하여 老齡年金이라 通稱되고 있다. 스웨덴의 年金制

(25) *Loc. cit.*, p. 63.

度에 있어서는 이러한 老齡年金이 基本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廢疾年金과 遺族年金은 副次的 性格을 띠는 것이다.

스웨덴의 老齡年金의 受給開始年齡은 원칙적으로 만 65세이다. 그러나 本人의 건강과 勞動市場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5年 앞당겨서 만 60세부터 支給받을 수도 있고, 또한 만 70세까지로 年金의 受給時期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前者에 있어서는 每月支給額의 0.5% 감액되며, 이에 반하여 後者に 있어서는 月別給與額의 0.6%가 加算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에 있어서는 老齡年金의 支給에는 退職을 前提要件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2. 基本年金

이 年金은 所得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 60세 또는 70세부터 支給되는 것이다. 本國에 居住하는 모든 스웨덴 國民과 外國에 長期 체류하고 있었다라도 만 57세부터 62세까지 계속하여 敎區事務所에 등록되어 있는 스웨덴인은 이 年金의 受惠者가 된다. 外國인은 當事國間의 協定에 의하여 相互適用의 保障이 있는 경우에는 이 年金의 適用을 받는다.

이러한 基本年金이 附加年金과 다른 것은 後者가 과거 15년간의 最高勤勞所得을 基礎로 하여 策定되기 때문에 그 給與額에 상당한 隔差가 있는데 반하여 基本年金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受給時期가 65歲, 또는 그 前後인가에 따라 약간의 增減이 있을 뿐 그 給與額은 均一하다는 것이다.<sup>(26)</sup>

基本年金은 政府가 每年初에 향후 1年間의 豫想消費物價를 基礎로 하여 策定하는 基本額의 一定比率로 算出된다. 그러나 基本額은 1年間 固定되는 것은 아니고 消費者物價指數가 3% 이상 變化하면 그에 따라 基本額도 修正되는 것으로 이것은 年金者의 購買力을 保護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制度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과거 18年間의 年度別 基本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基本年金은 月別로 支給되는 바, 1979. 1. 현재의 給與額은 다음과 같다. 單身年金者와 夫婦中 1인이 年金受給資格이 없는 경우에는 基本額의 95%, 夫婦가 모든 年金受給者인 경우에는 基本額의 155%가 支給된 것으로 이에 相應하든 月別給與額은 각각 1,037Kr와 1,692Kr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基本年金의 給與水準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1Kr는

(26) 文石南, *op. cit.*, p. 54: *Social Security Programs...*, p. 226.

年度別 基本額 1960~1977

| 年度   | 基本額   | 年度   | 基本額   | 年度   | 基本額   | 年度   | 基本額    |
|------|-------|------|-------|------|-------|------|--------|
| 1960 | 4,200 | 1965 | 5,000 | 1970 | 6,000 | 1975 | 9,000  |
| 1961 | 4,300 | 1966 | 5,300 | 1971 | 6,400 | 1976 | 9,700  |
| 1962 | 4,500 | 1967 | 5,500 | 1972 | 7,100 | 1977 | 10,000 |
| 1963 | 4,700 | 1968 | 5,700 | 1973 | 7,300 |      |        |
| 1964 | 4,800 | 1969 | 5,800 | 1974 | 8,100 |      |        |

(當年 1월에 책정된 額. 單位: Kr)

資料: 文石南, 前掲論文, p. 55.

약 120원에 상당) 그것은 최소한의 生活水準의 營爲에도 미흡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一定條件下에서 다음의 各種給與가 附加的으로 支給되고 있다.

먼저 後述하는 附加年金의 受給資格이 없는 者에는 單身年金者 또는 夫婦年金者를 막론하고 基本額의 33%에 상당하는 金額이 基本年金에 附加的으로 支給된다.

다음에 16歲 미만의 子女를 養育하는 世帯에는 子女 1인에 대하여 基本額의 25%가 加算된다. 그 配偶者가 만 60세 이상이나 基本年金의 受給資格이 없는 경우에는 主婦補充給與로서 그 남편의 基本年金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이 加算 支給된다.

이 외에도 補充給與로서 一定所得 이하의 者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支給하는 住宅手當이 하나의 重要한 項目으로 擧示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住宅手當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年金制度에 의한 補充給與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sup>(27)</sup>

### 3. 附加年金

이 年金은 前述한 基本年金과는 달리 一定所得 이상의 稼得活動者를 對象者로 하여 196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基本年金을 補充하기 위한 것이다. 이 年金은 그 勤勞所得이 基本額 이하인 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최소한 3年間(스웨덴인과 外國人에 공통)의 年金點數를 확보하지 못한 者도 그 適用對象에서 제외된다.

勤勞所得의 概念에는 固定給은 물론이고 職場에서 받는 프린지 베네핏으로서 예컨대 저렴한 食事に 대한 補助費 또는 住宅賃貸補助費, 또는 夜間,

(27) 平石長久 등 共著, *op. cit.*, p. 168.

休暇時勤務로 取得하는 一時的 副收入은 이에 포함된다. 특히 固定級과 一時的 副收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것은 前者에 있어서는 附加年金의 保險料를 使用者가 支拂하는데 반하여 後者の 경우는 勤勞者 자신이 負擔하기 때문이다. (28)

勤勞所得에는 또한 前述한 醫療保險과 勤勞災害補償에서 支給하는 現金給與와 勞動廳 主管下의 教育期間中 支給되는 教育補助費, 失業保險에 의한 給與, 軍服務中에 支給되는 補償額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附加年金의 算定基礎가 되는 것은 모든 범위의 所得은 아니고 前述한 基本額을 最低로 하고 그 7.5倍를 最高上限으로 하여 그 範圍內의 所得만이 그 對象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77年을 예로 하여 보면 이 해의 基本額이 10,700Kr이므로 최소한 10,800Kr에서 基本額의 7.5倍인 80,250Kr까지의 所得의 所得評價 범 위인 것이다. 이러한 범위내의 所得을 일반적으로 年金根據所得으로 呼稱 한다.

附加年金은 소위 年金點數에 의하여 결정되며 年金點數는 年金根據所得을 그해의 1월에 策定된 基本額으로 나눈 數值로서 그것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 까지 계산된다. 이러한 方式으로 算出되는 年金點數는 最低 0.01에서 最高 6.50까지가 된다. 이러한 年金點數는 附加年金의 크기를 決定하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 年金은 年金受給 以前의 가장 所得이 높았던 15年間の 年金點數의 平均値에 基本額의 60%를 곱하여 算出되기 때문이다. 이 附加年金支給에 있어서의 勤勞期間은 16~64歲까지이며 完全年金의 受給期間은 同 年金의 實施年度인 1960年에서 1980년까지는 20年으로 하고 그 이후는 매년 연장되어 궁극적으로는 30年의 期間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期間에 未達한 경우에도 그 未達期間에 따라 附加年金은 減額된다. (29)

附加年金의 支給時期도 前述한 基本年金과 마찬가지로 65歲 부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60歲로 단축, 또는 70歲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 前者에 대한 附加年金은 每月 0.5% 감액되며 後者に 있어서는 每月 0.6% 加算 된다.

다음 表는 基本額이 10,700Kr(1977)인 경우에 15年間の 最高年金點數를 근거로 하여 1年間 支給되는 完全附加年金額을 圖示한 것이다.

(28) 文石南, *loc. cit.*, p. 56.

(29) *Social Security Programs...*, p. 227..

〈表〉 基本額이 10,700Kr인 경우의 附加年金額

| 年金點數 | 附加年金額    | 年金點數 | 附加年金額    | 年金點數 | 附加年金額    |
|------|----------|------|----------|------|----------|
| 1.00 | 6,420Kr  | 3.00 | 19,260Kr | 5.00 | 32,100Kr |
| 1.50 | 9,630 "  | 3.50 | 22,470 " | 5.50 | 35,310 " |
| 2.00 | 12,480 " | 4.00 | 25,680 " | 6.00 | 38,520 " |
| 2.50 | 16,050 " | 4.50 | 28,890 " | 6.50 | 41,730 " |

資料 : 文石南, 前掲論文, p. 57.

稼得活動에 있어 身體的, 經濟的 또는 기타 사유로 制限時間만을 勤務한 者는 다음의 條件下에서는 60歲에서 64歲 사이에 部分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그 支給條件은 年金受給開始 이전의 1年中 5個月間은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며 또한 附加年金上 10年間の 年金點을 記錄하여야 한다.

#### 4. 廢疾年金

16歲 이상에서 病 또는 기타 事由로 稼得能力이 1/2이상 상실된 경우에는 65歲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는 老齡年金으로 轉換) 廢疾年金이 支給된다. 廢疾度의 認定에는 當人이 받은 教育이나 종래의 職務, 年齡, 生活環境, 기타 諸條件이 고려된다.

廢疾年金의 申請에는 반드시 專門醫의 診斷書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廢疾年金은 老齡年金의 내용에 따라 基本年金과 附加年金으로 區分된다. 이 年金은 내용적으로는 廢疾이라는 事由로 인하여 指定年齡 이전에 支給되는 老齡年金인 것으로 이 年金을 달리 早期年金으로 呼稱하는 事由도 그에 있는 것이다.

##### (1) 基本年金

이것은 正常稼得能力의 1/2이 상실되는 廢疾의 發生時에는 당연히 支給되는 것이다.

그 支給率은 完全廢疾의 경우는 老齡金額과 동일한 基本額의 95%에 상응하는 額이다. 이에 대하여 廢疾도가 67~83%와 50~66%의 경우에는 完全年金의 2/3, 1/2에 해당하는 金額만이 支給된다.

前述한 年金額은 單身年金者에 대한 것이고 夫婦인 경우에는 그 完全年金額은 老齡年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基本額의 155%이다.

廢疾年金上의 基本年金의 受給者에도 그 給與水準이 낮다는 점과 관련하여 各種의 補充給與가 支給되는 바, 그 支給條件 및 內容은 대체로 老齡年金의 경우와 동일하다.

## (2) 附加年金

特定勤勞者에 前述한 내용의 廢疾이 발생한 경우 當人이 그 前年度까지 年金點을 記錄한 경우에는 附加年金이 支給된다. 그 支給額은 老齡年金上의 附加年金과 원칙적으로 同一方法으로 算出된다. 따라서 完全(廢疾)附加年金額은 被保險者가 65歲에 支給하는 老齡年金上의 附加年金額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러한 廢疾年金上의 附加年金은 基本年金과 마찬가지로 그 廢疾度에 따라 減額된다.

## 5. 遺族年金

家長인 被保險者가 사망한 것은 그가 老齡 또는 廢疾年金의 受惠者이었던 경우에는 그 遺族에는 未亡人年金과 孤兒年金의 두 가지 形式의 年金이 支給된다.

## (1) 未亡人年金

남편의 死亡時 16歲 이하 子女를 扶養하고 있거나 또는 만 50歲 이상이고 그 結婚期間이 5年 이상인 未亡人에는 그 남편의 基本年金의 全額이 支給된다. 그러나 남편의 사망 당시 그 年齡이 36세에서 49세 사이이고 16세 미만의 被扶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은 50歲에 未達되는 各年度에 대하여 前述한 金額의 1/15씩이 減額된 金額이 支給된다.

그 남편이 附加年金의 受給資格이 있는 경우에는 未亡人에 當該附加年金의 40%가 支給되나 子女가 있는 경우에는 35%로 減額된다.

未亡人年金은 再婚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계속 支給되나 만 65歲부터는 老齡年金으로 代置된다. 또한 再婚한 경우에도 5年 이내에 離婚 또는 別居하는 경우에는 本人의 申請에 따라 그 受給權은 回復될 수 있다.

## (2) 孤兒年金

이것은 父母中 1者 또는 모두를 여윈 아동에 支給되는 것이다. 그 額은 父母中 1者를 여윈 孤兒는 基本額의 40%, 完全孤兒는 同額의 60%로 되어 있다. 그 父母가 附加年金受給者이었던 경우에는 父母中 1者만을 여윈 경우에는 第1子에는 當該年金의 15%, 次子 이후에는 10%가 支給되며, 完全孤兒에는 當該年金의 40%가 支給된다.

## 나.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

老齡年金은 그 내용상 基本年金과 附加年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도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給

與의 내용이나 支給條件은 어느정도 상이하다.

노르웨이의 老齡保險에 있어서는 基本年金과 附加年金은 모두 그 受給年齡이 원칙적으로 67세로 되어 있다.

附加年金은 前記한 16세에서 66세 사이의 期間에 3년 이상 基本額 이상의 所得實積이 있는 자에 지급된다.

基本年金의 支給額은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單身年金者에는 基本額의 100%, 그리고 夫婦年金者에는 150%로 되어 있다. 또한 그 配偶者가 年金受給資格이 없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子女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一定額의 補充給與가 지급된다.

附加年金의 算出方式은 기본적으로는 스웨덴의 制度와 같으나, 다만 스웨덴의 경우는 그 給與額은 當事者의 所得에서 基本額을 공제한 額의 60%인데 비하여, 노르웨이는 이 控除額의 45%로 되어 있다.<sup>(30)</sup>

疾病으로 인하여 稼得能力의 50% 이상이 상실된 경우, 그 時點에 前述한 基本年金 또는 附加年金의 支給要件이 充足된 경우에는 廢疾年金으로서 이들 두 가지 年金이 支給된다.

스웨덴의 경우, 廢疾率은 5/6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노르웨이의 廢疾年金은 보다 앞선 것이라 하겠다.

덴마크에 있어서의 老齡年金의 受給年齡은 원칙적으로 67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單身女性의 경우의 受給年齡은 62세이며, 또한 社會的, 職業的 與件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 年齡은 55세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基本年金의 受給에는 一金期間의 居住要件 이외에는 노르웨이와 같이 一定期間의 保險料納付實績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附加年金의 受給에는 3년 이상의 年金點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덴마크에 있어서도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早期年金制가 설치되어 있는 바, 그 支給年齡은 60부터이며 또한 그 이전 10년간에 있어 3년 이상 失業保險에 加入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 給與額은 정상적인 老齡年金의 支給年齡인 67세에 달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 초기 30개월은 從前所得의 90%, 차후 2년간은 所得의 80% 그리고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所得의 60%로 되어 있으며, 그 財源은 失業保險에서 조달된다.

基本年金의 給與額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이 基本額의 一定比로 책

(30) *Loc. cit.*, p. 180.

정되는 것이 아니라 定額制로 되어 있다. 1979. 4. 현재의 月給與額은 單身年金者에는 1,846Kr, 그리고 老齡夫婦에는 3,362Kr로 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 달러와의 換率은 덴마크 1Kr는 18.7센트, 그리고 스웨덴 1Kr는 22.6센트이었다.)

이러한 基本年金에는 所得調査를 조건으로 일정한 補充給與가 支給된다. 다만 子女의 扶養과 관련된 補充給與는 덴마크에서는 家族手當制度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sup>(31)</sup>

덴마크에 있어서도 廢疾年金은 노르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稼得能力의 50%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 支給된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있어서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老齡年金 또는 廢疾年金의 受給者인 家長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 遺族年金이 支給된다. 다만 덴마크에 있어서는 孤兒에 대한 年金은 遺族年金으로서가 아니라, 家族手當이 一部로서 支給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sup>(32)</sup> 기타의 점에 있어서는 三國의 制度에 있어 기본적인 差異點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 D. 失業保險制度

스웨덴에 있어서는, 다른 北歐國家도 그러하거니와, 公的인 失業保險制度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대신에 勞動組合이 임의로 설치한 私的인 失業保險制度가 실시되고 있는 바, 이 制度에는 정부가 多額의 補助金을 支給하고 있고 또한 勞動組合員에는 加入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制度는 일반적으로 準公的인 制度로 취급되고 있다.<sup>(33)</sup>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失業保險 이외에도 使用者와 政府에 의하여 그 資源이 조달되는 勞動市場扶助制度(Labor Market Support Program)와 기타 公的인 서비스에 의한 각종 施策이 실시되고 있다.

##### 1. 失業保險

###### (1) 加入

失業保險制度는 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組合이 主體로 되어, 勤勞者의 相

(31) *Loc. cit.*, p. 63.

(32) *Ibid.*

(33) 平石長久, *op. cit.*, p. 171.

互扶助 즉 共濟活動 방식에 의하여 失業保險金庫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各產業部門 勞動組合單位別로 40여개, 零細自營業者別로 4개의 失業保險이 조직·운영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組合員의 경우는 失業保險에의 加入이 강제적이나, 非組合員도 關聯產業別 失業保險에는 任意的으로 가입할 수 있다. 加入資格年齡은 16세에서 64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經濟活動人口의 2/3 정도인 2백만명 가량이 加入하고 있다.

## (2) 失業補償條件

失業給與의 受給에는 다음의 諸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i) 종래 就勞하고 있던 자로 12개월간 保險料를 지불하였으며, 또한 이 중의 5個月分은 失業 직전에 지불한 것이어야 한다.

(ii) 勞動能力이 있는 자로 勞動廳에 失業者 申告를 하였을 것.

(iii) 失業事由가 임의적인 離職, 本人의 過誤 또는 勞使紛爭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것.

(iv) 勞動廳이 적당하다고 주선한 새 職場에서 就業을 拒否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상의 條件이 충족되는 경우는 5일간의 待機期間 후에 失業給與가 支給된다.

## (3) 給與額 및 期間

失業給與는 週日制의 勞動時間에 一週에 5일간만 支給한다. 給與額은 失業保險組合에 따라 다르나, 1979년의 額은 受惠者의 從前賃金水準에 따라 日當 70~180Kr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失業給與는 正常月給의 11/12을 초과할 수는 없다.

給與期間은 원칙적으로 300일간이나, 55~66歲의 高齡者에는 450日間の 受給期間이 인정된다.

이러한 受給期間을 넘는 경우에는 後述하는 勞動市場扶助制度에 의한 給與가 受給된다. 老齡年金의 受給者에는 失業保險上の 給與額은 減액된다.

이러한 失業給與는 課稅의 대상이 되며, 또한 附加年金點數 산출의 기초가 된다.

## 2. 勞動市場扶助制度

### (1) 概 觀

이 制度는 全國의 規模의 公的 制度로서, 1973년의 法律로 제정되어 1974

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34) 그 財源은 費用의 2/3를 使用者의 據出金으로, 나머지 1/3은 政府의 一般稅收入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 制度에 의한 給與의 支給은 16세 이상으로, 전술한 失業保險에 의한 給與의 受給資格이 없는 자에 제한되어 있다.

### (2) 支給條件

이 制度에 의한 給與의 受給에는 다음의 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i) 失業 직전의 12개월 중의 5개월 이상 就勞하였을 것, 다만 學校를 곧 졸업한 자, 또는 職業訓練中의 자의 경우에는 勞動廳에 3개월간 등록하고 있었던 것을 조건으로 給與의 受給이 인정된다.

(ii) 1日 3時間, 또는 週 17時間 이상 勞動할 수 있는 자로, 勞動廳에 求職者로 등록되어 있을 것.

(iii) 소개된 適職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사유가 없을 것.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5일간의 待機期間 후에 一定給與가 支給된다.

### (3) 給與額 및 期間

이 制度의 給與는 週 5日間 日當 65Kr가 支給된다. 이 給與額은 配偶者나 기타 同棲하고 있는 者의 所得, 또는 자신의 資力에 의하여 減額될 수 있다. 給與의 支給期間은 55歲 미만의 者에는 150日, 그리고 55~59歲의 者에는 300日로 되어 있다. 또한 構造的 失業에 기인한 失業者의 경우는 55세,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60~66세의 者에 대해서는 給與期間上의 제한이 없다.

### 3. 기타 對策

前述한 給與 이외에도, 失業者에 대해서는 기타의 여러가지 給與가 支給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60~66세의 高齡者의 就勞를 促進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리하비리테이션手當이나 勞動市場에서의 早期退陣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견지에서 인정되는 老齡年金上의 早期年金을 들 수 있다.

또한 職業訓練에 의한 雇用促進策으로 訓練手當이나 기타 住宅手當, 生計費手當, 特別兒童手當, 交通費·教材費·授業料 등에 대한 特別手當 등이 있다. 이 외에도 就職에 따르는 移轉에는 旅費나 移徙費의 補助, 家族과의 別居가 부득이한 자에 대한 別居手當 등도 支給되고 있다. (35)

(34) *Loc. cit.*, pp. 173-174.

(35) *Loc. cit.*, pp. 174-175.

이러한 諸給與는 喪失所得의 補償 등의 失業에 대한 직접적 給與라고 하기 보다는 就勞를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給與이다. 그러나 이들 給與도 失業과 관련되어 支給되는 것이므로 일단 失業給與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다.

失業保險部門에 있어서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스웨덴이나 기타 北歐國家가 모두 公的인 失業保險制度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勞動組合이 임의로 설치한 私的인 失業保險制度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基本體制에 있어서는 國家間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部門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制度和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考察은 생략하기로 한다.

## E. 家族手當制度

### 1. 스웨덴의 制度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家族手當制度로서는 一般的 家族手當과 特別家族手當으로 區分되는 바, 前者는 포괄적인 公的 서비스制度로서 실시되는 통상의 家族手當이며 後者는 社會保險의 여러가지 給與(醫療, 老齡 등)의 支給時에 補充的 給與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家族手當인 것이다. 이 외에도 兒童福祉의 觀點에서는 이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施策을 舉示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社會的 서비스 또는 社會福祉에 속하는 部分으로 일반적인 社會保障의 範疇에서는 제외되는 分野로 分類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兒童福祉策에 관한 考察은 생략하기로 한다.

스웨덴의 일반적인 家族手當制度는 매우 간단하며 給與水準도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뛰어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다.

家族手當은 1명 이상의 子女를 양육하는 모든 스웨덴 居住者에 支給되고 있다. 被扶養者인 子女의 年齡은 원칙적으로 16세 이하이어야 하나, 學生의 경우에는 그 연령은 19세까지 연장된다.

手當額은 자녀 1인당 年 2,500Kr로 되어 있는 바, 스웨덴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第1子와 그 이후의 子女에 대한 手當額이 동일하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第2子, 第3子에 대한 手當額은 第1子에 비하여 어느 정도 增額되는 것이 보통이다.

家族手當에 소요되는 費用은 전부 國庫에서 支出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家族手當 이외에도, 예컨대 老齡年金

이나 廢疾年金의 受給者가 16세 이하의 子女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手當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部分에서 既述한 바 있다.

前述한 手當 이외에도 스웨덴에서는 住宅手當, 兒童教育에 관한 手當 등의 여러가지 給與가 支給되고 있으나, 이들 手當은 社會保障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 手當이나 給與도 子女의 養育과 관련되어 支給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附記하여 두는 것이다.

## 2. 隣接國家의 制度와의 比較

家族手當制度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의 제도는 스웨덴의 제도와 같이 매우 간단한 성격의 것인데 비하여, 덴마크의 제도는 그 내용상 어느 정도 더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노르웨이의 家族手當制度는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子女의 養育과 관련된 엄격한 의미의 家族手當만이 支給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 있어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그 手當額은 每子女에 대하여 均一制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노르웨이는 遞增制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兩國의 制度上의 차이가 있다.

1979. 4. 현재의 노르웨이의 家族手當額은 第1子は 年 2,038Kr, 第2子は 3,048Kr, 第3子は 3,324Kr이고 第4子 이후는 3,612Kr로 되어 있다. 또한 單獨扶養者는 第5子 이후에는 前記한 3,612Kr 이외에 일정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덴마크의 制度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제도에 비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일응 보다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나라에서의 狹義의 家族手當은 子女當이 年 1,808Kr의 均一制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家族手當 이외에도, 예컨대 一定所得 이하의 基本年金 受給者가 子女를 扶養하는 경우와 같은 一定條條下에서는 每子女當 2,724Kr가 지급되며, 또한 序親世帶에는 다시 2,080Kr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遺族年金의 一部로 支給되는 孤兒年金이 家族手當으로 支給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前述한 給與 외에도 青年手當(youth allowance)이 家族手當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다. 이 手當은 당해 家族收入이 年 70,000Kr 이하

(36) *Social Security Programs...*, pp.62-63.

이며 또한 당해 젊은 勤勞者의 所得이 4,000Kr 이하인 경우에는 年 7,000Kr 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37)

이상의 내용을 보면 덴마크의 家族手當制度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제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아마도 특히 이 문제는 관련 국가의 教育, 雇用문제 등에 관한 社會福祉施策과의 관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上的 家族手當制度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면, 同制度에 있어서의 給與項目은 그 자체만으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의 制度는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한 것이다. (38) 그러나 실제에 있어 프랑스의 家族福祉가 이들 北歐三國에 비하여 보다 나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이다.

#### IV. 結 論

이상으로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 및 同制度和 덴마크·스웨덴의 制度와의 개괄적인 比較 考察을 마치기로 한다.

本稿에서는 그에 앞서서 스웨덴을 포함한 北歐諸國의 社會保障 및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豫備의 考察을 하였던 바,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理由에서이다. 그 하나는, 여타의 國家에서도 그러한 것이나, 특히 北歐諸國에서는 社會保障은 社會福祉와 밀접한 關係下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觀點에서 스웨덴이나 그 隣接國家의 社會保障制度의 考察에 앞서서, 매우 개괄적이기는 하나 이들 國家의 社會福祉의 범위나 내용을 기술하여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다른 하나는 현재 社會保障의 概念의 多樣性을 감안하여 社會福祉와의 關係에서 社會保障의 觀念이나 範圍를 정의하려는 것이었다.

筆者는 社會保障의 觀念을 비교적 狹義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소위 社會的 危險에 대한 被保險者의 經濟的 安定的 保障을 목적으로 하는 所得의 配分配制度로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保障의 觀念은 ILO의 定義와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 범위도 ILO의 見解에 따라 疾病·

(37) *Loc. cit.*, p. 63.

(38) 拙著,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pp. 101-119.

出産給與, 老齡·廢疾·遺族給與, 勞動災害給與, 失業給與 및 家族手當으로 限定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도 醫療保險, 老齡保險, 勞動災害補償, 失業保險 및 家族手當制度의 5個部門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또한 그러한 範圍內에서 隣接國家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制度와의 比較·考察을 시도하였다.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和 덴마크·노르웨이의 制度와의 比較·考察의 결과로서는 三國의 制度間에는 근본적인 隔差나 相偉點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基本前提下에서 醫療保險部門에 한정된 것이나, 다음의 두 가지 差異點은 일단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疾病保險의 現物給與에 있어서는 덴마크의 制度가 일응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는 住民의 상당 부분에 대한 醫療는 無償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公共病院에서 入院診療는 無償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 國家間의 隔差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出産給與部門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制度가 단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덴마크,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이 給與는 出産과의 관련에서 그 給與期間도 각각 14週와 100餘日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스웨덴의 경우는 그 期間이 270日이며 또한 同給與는 10세 미만의 아동의 介護와의 관련에서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部門에서는 스웨덴의 制度는 기타 北歐諸國에 대하여 先導者的인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가장 완벽한 社會保障制度가 구비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 通常 觀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觀念이 과연 실제와 부합하는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다.

社會保障制度의 가장 中心의 要素인 醫療保險部門에 있어서는 現物·現金給與를 보면, 出産給與를 제외한다면,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기타 歐洲諸國의 制度에 비하여 특히 뛰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現物給與에 있어서는 一部負擔制의 適用이 있고 또한 現金給與는 一定上限線內에서 發病 이전 소득이 全額 補償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39)

勞働災害補償制度는 社會保障制度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일찍부터 形成된 部門이라는 事由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르나, 이 部門의 給與內容이나 水準은 대부분의 歐洲國家가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老齡保險制度에 있어서의 基本年金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制度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단 進歩的인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給與水準面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임은 물론이다.

失業保險은 公的인 制度는 없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의 缺點이라 할 것이다. 또한 家族手當制度도 그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대부분의 歐洲諸國의 制度보다 낙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 記述한 바를 종합하는 경우,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는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他國의 制度에 대한 模範的인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結論은 社會保障制度를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社會福祉施策과 분리하여 파악한 데서 오는 성급한 결론인지도 모른다. 실제 스웨덴에 있어서의 失業문제에 대해서는 社會保障制度로서의 失業保險制度 이외에도 社會扶助制度나 公的 서비스에 의한 다양한 社會福祉施策이 실시되고 있고, 또한 그 豫防을 위한 여러가지 勞働政策이나 制度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福利에 관해서도 그 教育, 保健 등의 諸側面에서 매우 실질적인 여러가지 福祉施策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

따라서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의 올바른 인식과 그 正當한 評價를 위해서는 社會福祉制度와의 綜合的 研究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社會保障制度는 그러할지 모르나, 특히 社會福祉制度는 단순히 書籍이나 文書만으로 그 실체가 파악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의 課題로 남겨 두고자 한다.

(39) P.R. Kaim-Caudle,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 A Ten-Country Study*, 1973. *Rapport d'information*, *op. cit.*; *Social Security Programs...*; 拙稿, “한국, 프랑스 및 독일의 醫療保險制度의 比較考察”, 拙著,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40) 文石南, *op. cit.*, p. 62; 스웨덴의 社會政策, J. Nasenius, K. Ritter 共著, 高須裕三 等 譯, pp. 118-120; 金環東, “스웨덴의 勞使關係,”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1, pp. 107-140; 林鍾哲, “스웨덴의 社會保障: 福祉國家로의 展開過程을 중심으로,” *op. cit.*, pp. 92-94.